

1. 개정이유

병역처분 통지서 및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에 대한 입영통지서 서식을 신설하고, 이 규칙 서식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처분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병무청 훈령에 규정된 병역처분 통지에 관한 서식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이 규칙에 병역처분 통지서를 신설하려고 함.

나.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에 대한 입영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82조, 별지 제94호의2서식 신설)

1) 현재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에 대한 입영통지를 이 규칙 제18호서식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통해 보내고 있어, 여비 지급 등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 안내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현역병입영 통지서와 별도로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에 대한 입영통지서를 신설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려고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2020. 8. 19. ~ 8. 31.)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8. 19. ~ 9. 28.)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병역처분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따른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4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4 중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별지 제48호서식”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94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및 별지 제8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6호서식 중 “미만”을 “미만(주)”으로, 같은 서식 중 “이상
기타”를 “이상(개월)”으로 한다.

별지 제10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병적기록표

(앞쪽)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병역판정검사 시																	
						현재																	
부모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학력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직업(경력)													
세대주	성명	전화번호		관계		자격·면허				방사선 등 촬영				병리검사									
심리검사	결과				적성분류																		
					혈액형																		
신체검사	장소 및 검사구분	연월일	신장	체중	시력		안과	혈압		내과	외과		이비 인후 과	비뇨 의학 과	피부 과	신경 과	정신 건강 의학 과	치과	신체 등급	수석 전담의 (서명 또는 인)	병역 처분	병역 판정관 (서명 또는 인)	
					좌	우		수축 기	이완기		일반 흉 부 신경	정형 성형											
검사소견(「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병역처분 및 변경사항												
비고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297mm×210mm[백상지 120g/㎡]

(뒤쪽)

군복무기록

군번			성명(漢字)			사진 (2.5cm×3cm)	구분	연월일	소속 및 직책	근거	확인 (서명 또는 인)	
군사특기	부호	특기명	연월일	근거								
진급강등	계급	연월일	인사명령 근거			확인						
군사교육	교육기관명		과정 및 기별		부여 특기	기간	복무 기록					
상벌	구분	사유		연월일	상벌권자	근거						
복무기간 단축	병역지정업체명		의무복무기간		단축기간	확인						
입원기록	입원일	퇴원일	상이의 구분	병명 및 발병 원인		병원명	휴가					
그 밖의 사항							전역	역종	전역일	「병역법」	인사명령 근거	확인(서명 또는 인)
							귀향지					

(앞쪽)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캐릭터 또는 로고”

이 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와 통지서를 대리수령하고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통지번호: _____

구분	[] 병역판정검사 []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통지내역	병역판정검사 일시	년 월 일(시 분)
	병역판정검사 장소	○○병역판정검사장(○○시·도 ○○시·군·구 ○○읍·면·동)

「병역법」 제11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유의사항

「병역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고, 같은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또한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누리집)에 공개합니다.

☞ 병역판정검사장 오시는 길 ☜

” 약 도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귀하께서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병역판정검사 시 지침물을 안내드립니다.

대상자	내용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이 첨부된 것)
기술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만 해당합니다)	기술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질병을 앓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 병무용 진단서 - 수술 등 기록지 사본 - 최근 촬영한 의료영상자료(방사선필름 등) - 병무청 홈페이지에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진단서 첨부 폐지질환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짜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 그 밖의 안내사항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학생인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이 연기됩니다.
- 다른 시·도 지방병무청(병무지청) 관할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다시 교부합니다.
- 질병을 감추거나 알리지 않는 경우 및 병역판정검사 할 때와 입영 할 때의 신체변화(질병의 발생·악화 등)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여비지급 안내

○ 병역판정검사 여비는 병무청장이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받은 신용카드(이하 “나라사랑카드”라 합니다)의 결제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나라사랑카드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여비가 지급될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 연기 대상자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되며,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관련 서류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재외공관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의 사실 확인에 따라 직권으로 연기함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국외여행허가자 명부 또는 출국자 명부에 따라 직권으로 연기함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구속 확인서, 판결문 사본 또는 재소증명서

※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됩니다.

병역처분(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앞쪽)

신체검사일										
수검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병역 판정 신체 검사 사항	신장	체중		체질량 지수	시력(맨눈)		혈압(mmHg)			
					좌	우	수축기	이완기		
	cm	kg								
	색각	안과		내과	외과					
					일반·흉부·신경			정형·성형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피부과	신경과	정신건강 의학과	치과	혈액형		
	병 리 검 사									
	간기능		간 염		소변검사			혈당검사		
	AST	ALT	B형	C형	혈뇨	단백뇨	당뇨	Glucose	HbA1c	
	혈구검사(CBC Count)				현미경검사(혈뇨 또는 단백뇨 '이상'일 경우)					
	WBC	RBC	HB	PLT	M-WBC			M-RBC		
	병역처분 등	신체등급				병역처분				
학력				재학연기						
이상이 있는 검사 과목 병명										

참 고 사 항

- ※ 병역증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날 귀하의 메일(나라사랑메일 등)로 보내드리며, 받지 못한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 가능합니다.
- ※ 병역처분(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다시 조회출력하거나 파일형태로 저장 가능합니다.
- ※ 뒷면의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에는 역종별 병역복무내용, 병리검사 참고치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뒤쪽)

안내사항								
연령별 병역의무 이행과정	19 세		20세이상~35세까지 (기피자등은 37세까지)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31까지		40세까지	45세까지
	병역 판정 검사	현역병 입영대상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복무		향토예비군 복무		예 비 군 추가편성	전시 병역의무 기간연장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전 시 군 로 소 집			
		전시근로역				전 시 군 로 소 집		
	병역면제		병 역 제 외					
역종별 병역복무 내용	역 종 별		복 무 내 용				복무기간	
	현 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결정된 징집순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2018.10.1.전역(소집해제) 부터 2주단위로 1일씩 단축	
	현 역 (상근예비역)		현역복무 5주(군사교육)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근무				○ 복무기간 육군 : 21개월 → 18개월 해병 : 21개월 → 18개월 해군 : 23개월 → 20개월 공군 : 24개월 → 22개월	
	보 충 역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또는 행정업무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다만,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은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위 복무기관에 소집되어 복무				보충역 24개월 → 21개월	
	대 체 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				36개월	
	전시근로역		전시에 근로소집되어 군사 지원업무 수행					
병리검사 결과	간기능검사 * 지방간, 급·만성간 염	AST	정상 : 0 ~ 40(IU/L)		간염검사 (보균여부)	B형 간염	정상 : 음성	
		ALT	정상 : 0 ~ 41(IU/L)			C형 간염	정상 : 음성	
	소변검사 (신장, 방광)	단백뇨	정상 : 1+ >		혈당검사 (당뇨병)	Glucose (혈당)	정상(공복) : 74 ~106mg/dl	
		혈뇨	정상 : 적혈구 0 ~ 4개 * 현미경 고배율 검사			HbA1c (당화혈색소)	정상 : 4~6% * 혈당 126이상 검사 실시	
	신장기능검사 등 5종		병무청 홈페이지-나만의 누리집-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확인					

혈액형검사는 '모름'으로 표시한 경우만 검사 ※ 미검사자는 본인진술내용 표기

유의사항

- 「병역법」 제14조의2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법」 제77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재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변경 등으로 다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은 종전의 사항이 본 통보서의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사항으로 변경되며, 일부 과목만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받지 아니한 과목에 대하여는 기존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가 표시됩니다.
- 신체등급판정에 이의(신장·체중 제외)가 있는 경우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병역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 소집대상자는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다음해 5월 중 입영일자를 결정(현역입영대상자에 한함)하여 안내문을 통해 알려드리며 홈페이지와 ARS(1588-9090)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입영신청 방법 및 접수 시기(경로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 신청시기·방법은 해마다 변동 가능
 - 현역병입영 대상 : 본인선택원(접수시기 : 7~11월, 자세한 일정은 병무청 홈페이지 공고/공지 참고, 선택 : 다음연도 입영일자)
* 20세 이상자는 '당해연도 입영일자 본인선택'이 가능함
 - 사회복무소집 대상 : 재학생 입영원(1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12월)
 - 현역병 입영일자·부대 결정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서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전산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대학교·고교 재학생(등록금 납부자, 휴학생 포함)은 자동으로 입영연기 되며, 대학 재학생이 입영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연기 사항(기간 등)은 병역판정검사 받은 다음 날부터 병무청 홈페이지(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에서 조회·출력 가능합니다.
- 병역판정검사 시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 받은 후 학력이 변동(검정고시 포함)되는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

“캐릭터 또는 로고”

받는 사람

입영 통지서

통지번호: _____

※ 뒤쪽 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안내하는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관계
주소	
입영부대	
모이는 장소	입영일시

「병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영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2. 질병으로 인하여 입영이 곤란한 사람은 입영일 연기원 또는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재신체검사원)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연기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입영하시더라도 입영 후 군 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귀가 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통지번호 _____ 여비를 받았을 때 (영수증)		통지번호 _____ 여비를 찾으실 때 [] 계좌입금 [] 우체국 제출						
성명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입영일		성명						
입영부대		생년월일						
금액		입영일/부대						
◆ 유의사항 여비를 찾으신 후 입영하지 못한 경우 입 금정보 “보내는 분”에 반드시 본인 이름을 적은 후 아래 계좌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반납계좌 우체국 000-000-00000000		취급국일부인						
		여비지급기간						
		금액	십만	만	천	백	십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취급국일부인	
		년 월 일						
		영수인 (서명 또는 인)						
(본인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						

210mm×297mm[백상지 80g/㎡]

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입영 시 유의사항

1. 입영통지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및 병무청장이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받은 신용카드(이하 “나라사랑카드”라 하며,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기술자격 또는 면허취득자는 그 자격 또는 면허증 원본이나 사본을 지참하고 입영하시기 바랍니다.
3. 입영 시 두발은 스포츠형으로 단정하게 하고, 복장은 간소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입영부대에서 지급합니다. 부대 주변에서 판매하는 세면가방, 세면도구, 군번줄, 고무줄, 바느질세트, 양말, 볼펜, 손톱깎이, 군인수첩, 전투화 깔창, 상비약 등은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대 주변에서 구입한 불필요한 사제품은 입영부대에서 회수하여 귀하의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만, 복용 중인 의약품은 진단서나 처방전과 함께 지참이 가능합니다.
5. 입영 후 현금카드, 휴대전화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훈련기간 중 지급되는 봉급으로 물품구매가 가능하니 입영 시 현금을 지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라사랑카드에 소액(1~2만원) 입금 후 입영은 가능(귀가 등 유사시 필요)
6. 재학생은 입영으로 인한 휴학(일반휴학에서 군 입영휴학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입영하시기 바라며, 개인소지 휴대전화의 일시정지(군입대 사유), 명의변경 및 인터넷 사이트(유료) 해지는 입영 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본 통지서 복사본으로 활용 가능)
7. 복직보장 안내(병역법 제74조) : 고용주 등은 병역의무자가 군 입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규정 : 1.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2.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입영기일 연기 등 안내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입영일자 5일 전까지 관련 민원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영기일 연기 사유

-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천재지변, 재난구호, 행방불명
- 대학(원)입학시험 응시, 각 군 모집시험 응시 및 선발
- 국외출국(대기) 등

○ 보충역, 전시근로역 사유 등

- 보충역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 전시근로역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제출안내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 등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영부대 신체검사 등 안내

- 입영 후 7일 이내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귀가 조치됩니다.

※ 입영 전 과다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 섭취는 혈압 및 지방간 수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본의 아니게 귀가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영 시 병무용 진단서, 수술기록지, 방사선 필름 등을 지참하시면 입영부대 신체검사에 참고하게 됩니다.

○ 현역의 특기분류 및 부대배치

- 신병 군사특기 분류는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최적의 특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부대배치는 개인별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무작위(랜덤) 방식으로 분류하여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인사청탁의 유혹을 받거나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 www.army.mil.kr/alg
- 입대전 육군 복무관련 궁금한 사항은 육군본부 홈페이지 육군 복무안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비수령 위임장

- 입영여비를 아래 사람에게 대리 수령하도록 위임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자(병역의무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대리 수령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주소:
- 관계: 연락처(☎) :

대리수령자는 신분증 지참

여비수령 및 반납 안내

- 우체국 제출에 √ 표시된 사람의 입영여비는 지급기간 동안에 가까운 우체국에서 찾아야 합니다.

☞ 입영통지서 또는 여비지급통지서(앞쪽 서식), 신분증 지참

※ 여비 지급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병무지청)으로 문의(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입금에 √ 표시된 사람은 나라사랑카드 계좌로 입영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여비를 입금합니다. 또한 희망하는 계좌로 여비를 지급받고 싶으신 분은 해당 지방병무청(병무지청)으로 문의(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연기 또는 가사사정으로 입영하지 못할 경우 여비를 찾지 않도록 하고 만약, 이미 찾으신 경우에는 앞쪽의 “여비를 받았을 때”에 적힌 유의사항에 따라 찾으신 여비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통보서

[illegible]

※ 작성요령

- 업종별 업체 명칭은 가나다 순으로 작성합니다.
- 승선 가능 선박 톤수: 해운업 분야 업체의 경우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 업체의 경우 100톤 이상

297mm×210mm[백상지 80g/㎡]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앞쪽)

개별약정				
서약 당사자	피고용인 (승선근무예비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해운·수산업체 (고용주)	업체명	사업의 종류	
		전화번호(복무관리 담당자)		
		소재지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성명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직위	
근로조건 등	해운·수산업체명(소재지)		취업일	
	복무해야 할 업무(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근로시간		휴가	
	시간외 근무에 대한 특약			
	임금 지급방법(연봉, 월급 등)		근로계약서 교부일	

그 밖의 특별약정(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본 서약의 당사자들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및 제34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피고용인(승선근무예비역)

(서명 또는 인)

해운·수산업체(고용주)의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승선근무예비역은 부당노동행위나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법률구조(상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운·수산업체의 장은 이 서약서의 사본을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시 편입원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일반약정

1. 본 서약은 해운·수산업체(고용주)와 승선근무예비역(피고용인) 간의 고용계약 내용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승선근무예비역의 준수사항

가. 해당 업체의 선박(해운업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에서 항해사 · 기관사로서 성실히 복무해야 하며, 해운·수산업체 장(고용주)의 이해에 반하여 이득의 취득, 영업비밀의 유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해운·수산업체로 이동하여 근무해야 한다.

- 1)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 2) 복무 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동근무를 할 수 있다.

- 1)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어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 2) 「선원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 3)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군사교육소집에 적극 참여하여 입영훈련에 최선을 다한다.

승선근무예비역 : _____ (서명 또는 인)

3. 해운·수산업체의 장(고용주)의 준수사항

가.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조건으로 병역의무자들에게 금품 또는 부당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 승선근무예비역을 해운·수산업체의 선박(해운업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에서 항해사 · 기관사로 승선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에 복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 승선근무예비역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같은 업무에 복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바. 승선근무예비역이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에 따라 이동근무를 희망할 때에는 즉시 이동근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이동근무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병역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아. 승선근무예비역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서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선원법」, 「근로기준법」, 「선박직원법」에 따른다.

해운·수산업체(고용주)의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_____ (서명 또는 인)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

		처리기간	20일
병역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생년월일	
입상경력	대회명	종목	
	등위(해당 등위에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요원> ☐ 그랑프리 ☐ 1등 ☐ 공동 1등 ☐ 2등 ☐ 공동 2등 <체육요원> ☐ 올림픽대회 1위 ☐ 올림픽대회 2위 ☐ 올림픽대회 3위 ☐ 아시아경기대회 1위	대회기간/입상일	
	국가무형 문화재	종목	전수기간
	자격증명	자격취득일	
복무사항	복무분야(「예술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6조 및 별표4에 따른 해당분야 기재)	근무지	
병역사항	병역판정검사 연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지방병무청	
	역종	입영 예정일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소속 협회 또는 연맹이 발급하는 입상 확인서 사본 1부(「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2. 대회 주최측 발급 상장, 입상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대회 입상자 명단 및 점수표(그랑프리, 1등, 2등까지의 전체 명단과 점수표) 각 1부(「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3.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사본 1부(「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4. 군복무 확인서 1부(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만 제출하며, 이 경우 「병역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	--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라 위의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병무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전문연구 편입: 5일, 산업기능 편입: 2일 전직, 교육훈련, 파견근무(출장), 편입취소 유보: 3일		
구분	[]편입 []전직 []교육훈련 []파견근무(출장) []편입취소 유보				
공통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년(졸업, 휴학, 중퇴, 야간대 재학)		
	병역지정업체 (재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사 항	업체명 · 지방자치단체		업체취업일(승선 예정일) · 후계농업경영인 선별일	
		소재지		담당업무 · 사업작목	
		근무부서		대표자 성명 및 대표자와의 관계	
연구실/실험실명(동, 호수 기재) * 박사학위과정		(주)연구실 (주)실험실			
편입신청	전문연구 요원	학위 []학사 []석사 []박사	학위명(학위번호) 학위취득일		
		학교명(학과)	입학일	[]휴(퇴)학일, []수료일, []졸업일	
	산업기능 요원	자격 · 면허명 및 등급(입상대회명, 분야 및 등위)		자격취득일(입상일)	
	병역사항	[]현역 []보충역	입영(소집) 예정일		
전직 등	전직	업체명	소재지		
		전직사유	대표자 성명 및 대표자와의 관계		
	파견근무 교육훈련	업체(기관)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개월)		
편입취소 유보	해고사유		해고일		
	해고 구제(소송) 신청기관		해고 구제(소송) 신청일		

「병역법」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업체(기관)장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편입신청	공통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1부
	전문연구요원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수여증명서(학위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합니다) 1부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2.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수료관계증명서 1부
	산업기능요원	1.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현역병입영 대상자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정보처리 직무분야: 정보처리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 3. 후계농어업경영인: 후계농어업경영인 확인서 1부 4.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없음
파견근무 교육훈련	복무기록표 사본 1부	1.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현역병입영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2.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운전·운송, 건설기계 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편입취소 유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1부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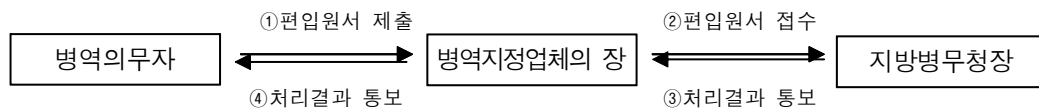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편입신청	1. 대표자는 모기업의 대표이사를 말하며, 관계는 본인과의 관계(예: 부, 모, 조부 등)를 반드시 적습니다. 2. 신청기관은 전문연구요원과 기간 및 방위산업체의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의 장을,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적습니다. 3. 기능특기자는 임상대회명, 분야 및 등위(1, 2, 3등)를 적습니다.
전직 등	대표자는 모기업의 대표이사를 말하며, 관계는 본인과의 관계(예: 부, 모, 조부 등)를 반드시 적습니다.

처리절차



성실복무 · 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앞쪽)

개별약정				
서약 당사자	피고용인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병역지정업체 (고용주)	업체명	사업의 종류	
		전화번호(복무관리 담당자)		
		소재지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성명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직위	
근로조건 등	취업장소(근무지 · 사업장주소)		취업일 · 후계농어업경영인 선발일	
	복무해야 할 업무(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근로시간	휴가		
	시간외 근무에 대한 특약			
	임금 지급방법(연봉, 월급 등)	근로계약서 교부일		

그 밖의 특별약정(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본 서약의 당사자들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피고용인(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서명 또는 인)

병역지정업체(고용주)의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부당노동행위나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법률구조(상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기관[지방병무(지)청]은 이 서약서의 사본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편입원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일반약정

1. 본 서약은 병역지정업체(고용주)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피고용인) 간의 고용계약내용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준수사항

가. 편입 당시의 연구 또는 제조·생산 분야 등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해야 하며, 특히 고용주의 이해에 반하여 이득의 취득, 영업비밀의 유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해야 한다.

- 1)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2) 복무 중인 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 4)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다.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의 위법·부당한 직무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병역지정업체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게 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라. 병역지정업체로부터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마. 군사교육소집에 적극 참여하여 입영훈련에 최선을 다한다.

바. 후계농어업경영인은 농어업 외 사기업 취업, 개인 영리활동 등 다른 분야 근무 또는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 _____ (서명 또는 인)

3.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의 준수사항

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병역의무자들에게 금품 또는 부당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편입 당시의 연구 또는 제조·생산 분야에 성실히 복무하게 해야 하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복무업무의 변경을 받기 전까지 편입 당시 외의 업무에 복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같은 업무에 복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징집·소집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마. 전직제한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전직을 희망할 때에는 즉시 전직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전직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본 서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고용주 : _____ (서명 또는 인)

(앞쪽)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한) 휴대용 병력동원소집 안내서			
성명		군번	
입영부대			
입영일시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부터 일째 되는 날 시부터 시까지		
모이는 장소			
도착지			
※ 전화상담 ☎ 1588-9090⇒0번(병무민원상담)			

위의 휴대용 병력동원소집 안내서는 통지서 수령 즉시 잘라내어 지갑 등에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통지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동원에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미리 보내드리는 통지서입니다.

○ 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동원령이 선포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여야 합니다. 동원령은 국방상 목적 달성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며, 신문·방송 등 공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입영일시 예시 : 만약 동원령이 1월 1일에 선포될 경우

구분	다음 날	다음 날부터 ○일째 되는 날						
		②일째	③일째	④일째	⑤일째	⑥일째	⑦일째	...
입영일자	1월2일	1월3일	1월4일	1월5일	1월6일	1월7일	1월8일	...
입영시간	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시의 시간에 입영							

○ 이 통지서는 책상 서랍이나 컴퓨터, 휴대폰 등에 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분실하신 분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NO. _____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입영구분 ☐ 개별입영 ☐ 차량수송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계급			병과(주특기)	군번	
입영부대				소집중대	
입영일시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부터 일째 되는 날 시부터 시까지				
모이는 장소					
도착지					
유효기간	위의 입영부대 동원지정 해제 시까지				

「병역법」 제46조에 따라 위 부대에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 이 통지서는 입영시 병무관계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뒤쪽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수령증

NO.

통지된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계급	병과(주특기)			군 번		
	입영 부대 입영 일시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부터 일째 되는 날 시부터 시까지					

위 사람의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일시 : 년 월 일 시
2. 주소 :
3. 이름 : (서명/인) 본인과 관계()
4. 연락처 : 전화 :
(대리수령하신 분은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은 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 예비군동대 등에서
대면교부 할 경우에 통지서 수령인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수령 시 작성 불필요)

이 휴대용 안내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본인이 입영할 부대와 시간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니 지갑 등에 소지
하시기 바랍니다.
※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분실하신 분은 병무청 홈
페이지(www.mma.go.kr)에서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

교부 및 독려사항

통지서 교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통지서 교부 여부	[] 교부, [] 불능, [] 회송		불능·회송 사유	

입영독려 일시	독려자 성명	면담자 성명	독려 결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위 사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지방자치단체, 예비군동대에서 지방병무(지)청으로 부터 교부를 의뢰받은 통지서의 교부 여부 및 입영 독려사항을 기록하는 란입니다.

.....

입영 신고서

통지서 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이 신고서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모이는 장소 또는 입영부대에 도착하는 즉시 병무관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군경 및 교통기관에 대한 요망사항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이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휴대한 사람에 대하여는 모이는 장소 또는 입영부대에 신속히 입영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입영할 때에는 예비군복을 착용하고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녀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소집에 따르지 않으면 「병역법」 제88조, 제97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내는 사람

"캐릭터
또는 로고"

받는 사람

○ 전화상담 ☎ 1588 - 9090

⇒ 0번 (병무민원상담)

○ 병무청홈페이지 : <http://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http://mwpt.mma.go.kr>

[평시 훈련용]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입영구분
통지번호 _____	☐ 개별입영 ☐ 차량수송	
성명	생년월일	군번
주소(예비군부대)		
입영일시		
입영부대	중대	
훈련기간		
훈련장소(도착지)		
차량탑승 장소/시간		
「병역법」 제50조에 따라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개별입영 대상은 입영일시까지 훈련장소 로 입영하여야 하며, 차량탑승 대상은 탑승시간까지 탑승장소로 모여야 합니다.		
이 통지서를 대리수령하고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때는 6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동원훈련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입영시간이 지나서 도착하거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공인자격증, 여권, 전역증, 나라사랑카드 등)이 없는 경우 입영할 수 없으며 무단불참으로 간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입영 하실 때 준비물** : 동원훈련통지서, 신분증, 본인통장 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 훈련 복장은 군 전역 시 지급받은 베레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을 착용해야 하며 훈련 복장을 미착용하거나 미지참한 경우는 훈련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 귀가 등 불이익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체형 변화로 전투복이나 전투화가 맞지 않더라도 착용 또는 지참하고 입영하시면 동원훈련소집부대(훈련장)에서 체형에 맞는 것으로 대여하여 주거나 교체하여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세부내용 뒷면 참조)
- 동원훈련을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되며, 타인을 대리하여 훈련에 참석하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속임수를 쓴 본인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휴무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동원훈련 참가를 위해 훈련부대나 차량탑승 장소로 이동 중(훈련 중, 훈련종료 후 귀가 중 포함)에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동원훈련 입영 안내 및 유의 사항	
훈련장소 교통편	1. 훈련장소 교통편은 '병무민원포털(http://mwpt.mma.go.kr)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일자/교통편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소집부대장이 입영안내 서신으로도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보안상 병무민원포털에 공개가 곤란한 일부 부대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안내 서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소집 통지서	1. 통지서를 분실한 사람은 '병무민원포털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소집통지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훈련소집통지서를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민원포털 (http://mwpt.mma.go.kr)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훈련소집통지서를 모바일앱・E-mail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민원포털(http://mwpt.mma.go.kr) → 동원/예비군 → 「모바일앱・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수령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영방법 변경신청	1.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 받았지만 출장 등 부득이하게 개별입영을 해야만 하는 사람, 개별입영 대상자로 통지 받았지만 수송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차량수송 부대에 한함)은 입영방법 변경 신청을 입영일 5일전까지 '병무민원포털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입영방법(개별/차량)변경 신청'화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이 사전에 변경신청 없이 개별 입영한 경우에는 통지된 대로 차량탑승에 준하는 여비가 지급됩니다.
입영여비 지급	1. 입영여비는 훈련이 끝난 후 소집부대장이 퇴소여비 및 훈련보상비와 함께 지급합니다. 2.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은 거주지에서 차량탑승 장소까지 대중교통요금만 지급됩니다. 3. 입영하기 전에 부득이하게 입영여비가 필요한 사람은 입영일 5일전까지 '병무민원포털 → 동원/예비군 → 여비지급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영일자 연기신청	1. 질병치료, 취업・채용시험 응시, 주요업무수행, 면허・자격시험(운전면허・워드프로세서・컴퓨터 활용능력・생업이나 취업과 관련이 적은 교양분야 및 그 밖의 연중 상시 접수 또는 상시 검정 면허・자격시험에 응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등의 사유로 동원훈련 입영일자에 입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훈련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연기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방법) 병무민원포털(http://mwpt.mma.go.kr), 우편, FAX, 방문 접수 ※ 연기사유별 구비서류는 병무민원포털 「동원훈련 연기신청」에서 확인, 주요업무수행 및 면허・자격취득시험응시 사유로 인한 훈련연기는 예비군 편성기간 동안 통틀어 2회로 연기 횟수가 제한됩니다. 2. 소집부대장의 「입영안내 서신」을 받고 소집부대에 불참의사를 전달한 것과는 별개로 반드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훈련소집 기간 중에 해외체류 사유로 출국예정인 사람은 별도의 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동원훈련을 연기한 사람은 재입영훈련을 받거나 동원미참자훈련을 받게 됩니다. ☞ (지방병무청 연락처) '병무청홈페이지 → 동원/예비군 → 지방병무청 동원훈련담당자 전화번호' 참조
전투복/ 전투화 대여 및 교체제도	1. 동원훈련 입영시 훈련 복장은 현역 착용기준에 준합니다.(전역시 지급받은 복장) * (기본복장) 베레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명찰, 방상외피(야전상의 : 동계) * (군모착용) 베레모(디지털 군복 대상자), 얼룩무늬 전투모(얼룩무늬 군복 대상자) 2. 전투복과 전투화 대여・교체제도 또는 훈련복장 및 준비물에 대한 상세내용은 해당 소집부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연락처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안내 서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대여)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지 않으면 훈련기간 동안만 대여 * (교체)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 지급
기 타	1. 통지서를 받은 이후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통지서를 보낸 지방병무청에 입영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와 지역예비군훈련 통지서를 함께 받은 사람은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보내는 사람

• 전화상담 ☎ 1588 - 9090
⇒ 0번(병무민원상담)

• 사이버상담 :
<http://www.mma.go.kr>

“캐릭터 또는 로고”

받는 사람

이 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와 소집점검에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평시 훈련용) 전시근로소집점검 통지서			
통지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예비군부대)			
입영일시	(4시간)		
입영부대			
입영장소 (모이는 장소)			
「병역법」 제53조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점검에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전시근로소집 점검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예비군 복무 5~6년차에 대하여 실시하며, 4시간 동안 부대편성 및 임무확인, 안보교육, 동원절차 등을 교육합니다.
2. 입영할 때에는 반드시 규정된 예비군복장(예비군모, 예비군복, 군화 등)을 착용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공인자격증 등)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3. 질병, 결혼, 각종 시험응시, 직계 존·비속 사망 등의 사유로 입영하기 어려운 때에는 입영전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하여 입영 연기를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지)청에 정해진 연기원서를 우편·FAX로 송부 또는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전시근로소집 점검 등에 대한 의문사항은 지방병무(지)청 또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한) 휴대용 전시근로소집 안내서			
성명		군번	
입영부대			
입영일시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부터 일째 되는 날 시부터 시까지		
모이는 장소			
도착지			
※ 전화상담 ☎ 1588-9090⇒0번(병무민원상담)			

위의 휴대용 안내서는 통지서 수령 즉시 잘라내어 지갑 등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한)
전시근로소집 통지서

통지번호 _____				입영구분 ☐ 개별입영 ☐ 차량수송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계급		병과(주특기)		군번	
입영부대					
입영일시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부터 일째 되는 날 시부터 시까지				
모이는 장소					
도착지					
유효기간	위의 입영부대 동원지정 해제 시까지				

「병역법」 제53조에 따라 위 부대에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장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통지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동원에 대비하여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미리 보내드리는 통지서입니다.
※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의 임무 : 전시 보급품 및 탄약 운반 등 군사업무 지원
- 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동원령이 선포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시에 입영하여야 합니다. 동원령은 국방상 목적 달성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며, 신문·방송 등 공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입영일시 예시 : 만약 동원령이 1월 1일에 선포될 경우

구분	다음 날	다음 날부터 ○일째 되는 날						
		②일째	③일째	④일째	⑤일째	⑥일째	⑦일째	...
입영일자	1월2일	1월3일	1월4일	1월5일	1월6일	1월7일	1월8일	...
입영시간	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시의 시간에 입영							

- 이 통지서는 책상 서랍이나 컴퓨터, 휴대폰 등에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를 분실하신 분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한)
전시근로소집 통지서 수령증

통지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계급	병과(주특기)	군번	
입영부대			
입영일시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부터 일째 되는 날 시부터 시까지		

위 사람의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일시: 년 월 일 시
 2. 주소:
 3.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과의 관계()
 4. 연락처: 전화 :
- (대리 수령하신 분은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은 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 예비군동대 등에서 **대면 교부 할 경우에 통지서 수령인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수령 시 작성 불필요)

이 휴대용 안내서는 동원령 선포 시 본인이
입영할 부대 및 시간을 신속히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니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를 분실하신 분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입영 신고서

통지서 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이 신고서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모이는 장소 또는 입영부대에 도착하는 즉시 병무관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군경 및 교통기관에 대한 요망사항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이 전시근로소집통지서를 휴대한 사람에 대하여는 모이는 장소 또는 입영부대에 신속히 입영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입영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녀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시근로소집에 따르지 않으면 「병역법」 제88조, 제97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부 및 독려사항

통지서 교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통지서 교부 여부	[]교부, []불능, []회송	불능·회송 사유	

입영독려 일시	독려자 성명	면담자 성명	독려 결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위 사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지방자치단체, 예비군동대에서 지방병무(지)청으로부터 교부를 의뢰받은 통지서의 교부 여부 및 입영 독려사항을 기록하는 란입니다.

보내는 사람

“캐릭터 또는 로고”

받는 사람

현역장교 입영 통지서

통지번호: _____

※ 뒤쪽 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안내하는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의무 []법무 []군종 []수의 [] 기본병과) 장교의 현역입영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관계	
주 소		
입영부대		
모이는 장소		입영일시

「병역법」 제58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영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2. 질병으로 인하여 입영이 곤란한 사람은 입영일 연기원 또는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재신체검사원)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연기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입영하시더라도 입영 후 군 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귀가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계
인

○ 입영 시 유의사항

가. 입영통지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및 병무청장이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받은 신용카드(이하 “나라사랑카드”라 하며, 해당 카드를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나. 입교 시 두발 및 복장 등에 관한 사항은 「입교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 입영하기 전 건강관리 및 귀가

가. 입영 전 과도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섭취는 혈압 및 지방간 수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본의 아니게 귀가될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영 후 7일 이내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귀가 조치됩니다.

- 치유기간 3월 미만 : 치유기간이 지난 후 가장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조치

- 치유기간 3월 이상 또는 치유기간 없음 :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즉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제출안내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 등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처벌규정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생계곤란: 90일

그 밖의 사유: 3일 이내(세부기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름)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앞쪽)

구 분	[]복무기간 단축 []전시근로역 편입	[]보충역 편입 []병역면제	[]대체역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병역처분 변경
병역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병역사항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 대상자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대체복무요원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예비군대체복무소집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군사교육소집, 복무 중) []예비군 []기타()		
신청내용	병역 감면 등	[] 복무기간 단축 신청	[]생계유지곤란 사유 []국가유공자
		[] 보충역 편입 신청	[]국가유공자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수형자
		[]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	[]생계유지곤란 사유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수형자 []중학교 중퇴 이하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귀화자 []고아(아동양육시설 등 5년 이상 재원 포함)
		[] 병역면제 신청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한 사람
		[] 대체역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신청	[]생계유지곤란 사유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귀화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고아(아동양육시설 등 5년 이상 재원 포함)
	복 무 희 망	[] 병역처분 변경 신청	[]질병치유 []장애인 []국외이주자 []고아 []귀화자 []학력변동 () []북한이탈주민 - 현역[], 사회복무[] 희망: 년 월 일
		[] 실거주지 등 신체검사 신청	[] 실거주지 (소재지:) - [] 학생 [] 학원수강생 [] 직장인 [] 기타 [] 주민등록지 [] 병역판정검사 시 관할 조정 지역

「병역법」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5조 및 제6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생계유지곤란 사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2. 가사상황 신고서 1부 3.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병무용진단서 1부(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4. 일반/집합 건축물 대장 5. 자동차등록원부(갑/을) 6.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7.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8. 건물등기부 등본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휴업사실 증명 서류 12. 사업자등록증 13. 폐업사실 증명 서류 14. 소득금액증명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6. 장애인증명서 17. 산재보험급여지급 증명 서류 18.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20.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국가유공자(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장애인증명서 2.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인 경우)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1.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수형자(6개월 이상 형을 받은 사람)	판결문 사본 1부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 1부(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시·군·구·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고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1. 판결문 사본 1부 2. 병무용진단서 1부(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귀화허가서 사본, 관보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중학교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병무용 학력증명서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거나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질병이 있는 사람	병무용진단서 1부	없음
질병이 치유된 사람	없음	없음
실거주지 등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희망하는 사람	학교 재학, 학원 재원, 재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표 등본
학력이 변동된 사람	학력증명서 1부	없음
북한이탈주민(「병역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병역이 면제된 사람)	없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를 √표 체크한 후 병역의무자란에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자신의 병역사항 및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복무기간 단축, 보충역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대체역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병역처분변경) 중 해당 사유에 √표 체크하십시오.
3. 신청일, 신청인, 의무자와의 관계를 적은 후 서명하여 주십시오.
4. 유의사항
 - 가.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처분을 하기 위하여 귀하 및 귀하 가족에 대한 재산과 수입을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합니다.
 - 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병역감면이 제한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5조(공공기관 등의 범위) 영 제47조제1호 및 제5호에서 “국 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별 표 1과 같다. 제42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① (생 략)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65조의 2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을 재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 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 지서를 새로 지정한 복무기관에 서의 근무개시일 7일 전까지 본 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7조의4(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영 제70조의2에 따른 남 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 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82조(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 장교 등의 입영) ① 영 제121조	제16조의2(병역처분의 통지) 지방 병무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때에는 별 지 제14호의2서식을 따른다. <u><삭 제></u> 제42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 ----- 별 지 제48호서식-----. 제82조(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 장교 등의 입영) ① -----

제3항에 따른 의무·법무·군 중·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 의 현역입영 통지서는 <u>별지 제1 8호서식</u>에 따른다. ②·③ (생략)	----- ----- ----- <u>별지 제94 호의2서식</u>-----. ②·③ (현행과 같음)
---	---